

현 행		개 정 안			
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li> <li>○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li> <li>○ 형제자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height: 100px;"> <tr><td>2</td></tr> <tr><td>1</td></tr> <tr><td>1</td></tr> </table>	2	1	1
2					
1					
1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비고 : -----  
-----  
-----  
-----.

#### 【 4 】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5. 19.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본 사업은 읍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리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리장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리장자녀중 우수학생 및 경제여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리장직 기피현상으로 인한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기준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현실여건에 맞게 부분개정 함으로써 다수의 리장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골자

1. 장학금 지급 목적의 일부 조정 (안 제1조)
2. 장학생의 자격요건 완화

. 리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조정 (안 제2조)

3. 선발요건의 일부 조정 (안 제4조)

4.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개선

. 장학금액 : 공납금 전액 지급을 당해년도 지방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  
으로 적용 (안 제6조)

. 지급방법 :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직접  
지급 (안 제7조 제1항)

5. 지급의 정지조건 일부 삭제 (안 제8조 제1항 제2호)

### 양주군조례 제 호

####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증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  
한 자에게”를 “학업 성적이 우수한 모범 고등학생에게”로 한다.

제2조증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증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군 인사위원회의”로 하고,

제2항증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을 삭제한다.

제6조증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를 “당해년도의 지방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적용한다.”로 하고, “공납금의 일부만을”를 “수업료만을”로 한다.

제7조 제1항증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를 “분기별  
매분기 개시 1월 이내에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직접”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증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내지 제5호를 제2호내지 제4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금하는 리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 고등학생에게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생 략)	제2조(장학생의 자격) 2년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4조(선발) ①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할 때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교려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① 군 인사위원회의 ② (삭 제)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6조(장학금액) --- 당해년도의 지방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적용한다. --- 수업료만을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 분기별 매분기 개시 1월 이내에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직접

현 행	개 정 안
<p>②(생 략)</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 (생 략)</p> <p>1. (생 략)</p> <p>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p> <p>3. (생 략)</p> <p>4. (생 략)</p> <p>5. (생 략)</p> <p>②(생 략)</p>	<p>②(현행과 같음)</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 (삭 제)</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4.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5 】 양주군사무의읍. 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5. 26.  
제출자 : 양주군수

## 제안이유

이 조례는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의 개정으로 농지전용업무 세부처리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 '94. 4 30)이  
제정되어 동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개 항목 업무처리를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별표) 개정

- 농지의 일시 전용신고의 3,300m<sup>2</sup>이하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및 제4호)
- 농지전용신고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1호 내지 제6호)
- 관상수 식재, 재배신고 (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